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 제도 안내

【관련법령: 전파법 제58조의2】

❧ 적합성평가란?

-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해 정부가 정한 기술기준에 따라 제품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이유

-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제품은
 - ▶ 통신망이나 소비자에게 전자파에 의한 위해를 줄 수 있습니다.
 - ▶ 전자파 간섭으로 제품 간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으며, 화재·감전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제품

- 무선기기, 유선기기, 정보기기, 전기용품 등으로 전기를 전원으로 사용하는 기기는 대부분이 해당 됩니다. (블루투스 제품, 스마트폰 등)※ 구체적인 제품 [붙임] 참고.
- 제품 및 포장에 반드시 KC인증 마크를 부착해야 합니다.

<적합성평가 인증마크>



❧ 불법방송통신기자재를 판매할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전파법 제84조】
 - ▶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기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전파법 제86조】
 - ▶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기자재를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진열(인터넷 게시 포함)·보관·운송하거나 무선국·방송통신망에 설치한 자
-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전파법 제90조】
 - ▶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해당 기자재를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해당 기자재와 포장(인터넷에 게시하는 경우를 포함)에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실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 해외직구 제품 중고 거래

-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해외에서 반입한 제품은 1인당 제품별 1대의 범위 내에서 반입 이후 1년 이상 경과 되었다면 중고 거래가 허용, 그 외는 불법

적합인증 대상 기자재류	적합등록 대상 기자재류
RFID/USN용 무선기기	주차권발행기, 주차권판독기
무전기, 무선희출기	컴퓨터류(퍼스널·노트북컴퓨터 등)
무선마우스, 무선키보드	모니터류, LCD TV, 프린터류,
무선원격시동장치	허브/유선공유기, 카드리더기
완구용무선조종기	마우스, 오토마우스, 키보드, 조이스틱
블루투스 이어폰, 블루투스 헤드셋	디지털카메라, 디지털캠코더
무선랜, 무선공유기, 무선모뎀	스캐너, 바코드스캐너, 터치스크린
무선마이크, 무선조이스틱	외장형 HDD, CD ROM DRIVE
무선 타이어공기압 측정기	MP3(MP4), CD/DVD PLAYER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	마더보드, LAN카드, VGA카드, 사운드카드
무선휴대전화기, 디지털무선전화기	영상처리시스템, 지문인식기
무선카팩, 무선차임벨, 무선앰프	전자칠판 및 보드, 프로젝터
무선전화경보자동수신기	디지털액자, 디지털게시판, 키오스크
경보자동전화장치	CCTV카메라, 전자시계, 전자악기
비상통보기기(화재·가스·침입·장치 고장 등의 통보를 위한 장치 등)	산업용·과학용·의료용·가정용 고주파이용기기류
무선방위측정기	앰프, 위성방송수신기
무선셀카봉(리모콘)	전동공구(정격입력 1.5kW 이하)
종합유선방송국 주전송장치류	식기세척기, 식기건조기, 전기의자, 전동침대, 전자레인지, 전기토스터
전화교환기, 데이터교환기, 키폰시스템	전기다리미, 전기프레스기, 전기청소기(정격입력 2.5kW 이하)
디지털CATV 셋톱박스	형광등기구, LED등기구, 일반 조명기구
IPTV 셋톱박스	라디오수신기, 가습기, 자동판매기
선박국용레이다기기	(광)분기기, (광)분배기
방송공동수신설비류(증폭기, 레벨조정기, 광증폭기 등)	누전차단기, 교통카드 충전기 팩스기기, 모뎀, 신용카드 조회 단말기

※ 기타 자세한 적합성평가 대상 목록은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23-13호(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나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www.rr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